

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8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1.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

시설명	구분	소재지	시설규모		위탁일
			연면적(㎡)	정원	
구립 응암샘별어린이집	변경	은평로 220(응암1동)	906.36㎡ (지상3층)	111명	2021. 8. 1. (예정)
구립 폭포동어린이집	변경	진관1로 77-8 폭포동 4-1단지 아파트 내(진관동)	180.45㎡ (지상1층)	39명	2021. 8. 1. (예정)

2. 위탁기간 : 5년

※ 위탁일은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

가. 공통사항

-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(협동조합)
- 운영체의 원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

나. 개 인

-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※ 단, 공고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(대표자 및 원장)는 제외

다. 법인 및 단체

-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협동조합)
- 정관 또는 회칙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영유아보육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,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결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

※ 원장의 경우 선정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(대표자 및 원장)는 제외

4. 신청 제외대상

- 가.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- 나.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- 다.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
- 라. 운영체의 공신력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
- 마.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위탁 운영하려는 자
- 바. 타인(법인, 단체 포함)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
- 사.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·부당사실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

5. 위탁 운영 조건

- 가. 위탁범위: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- 나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취약보육(영아, 장애아, 다문화아동, 시간연장형)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
- 다.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함
- 라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
- 마.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·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위탁취소
- 바.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 수행
- 사.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“구립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 계약서”로 별도 체결하며,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은평구 의견에 따라야 함

6.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21. 6. 8.(화) ~ 2021. 6. 29.(화)[21일간]

나. 접수기간 : 2021. 6. 22.(화) ~ 6. 29.(화) 18:00까지

다. 접수장소 : 은평구청 보육지원과(은평구청 구의회동 3층)

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접수(09:00~18:00)

※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, 우편, 택배, 인터넷, 대리 접수 불가

마. **다면인성검사(MMPD) 실시** : 신규 위탁체 신청자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다면인성검사에 참여하여야 함. (90분가량 소요) ※ 불참시 심사 포기 간주
- 실시일에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용 테이프,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/ ※ 실시일 별도 통지

바. 제출서류

구 분	서류항목	운영체		
		법인	단체	개인
개별사항	•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(법인 인감증명 불입)	○		
	• 등록증,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
	• 어린이집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
	• 주민등록등본			○
공통사항	•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•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•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•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 - 부동산(등기부등본 등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, 부채증명서(해당 시)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의 경우 재산구분 표기) ※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%인정 •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•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취약보육 2개이상 실시 포함) 및 예산서(구체적작성) • 자부담 승낙서 •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(별도 제출) - 기본증명서: 대표자 및 원장 - 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: 대표자 및 원장			

사. 제출부수: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

16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15부)

○ 제출서류는 반드시 “스프링 제본”과 “양면인쇄(쪽수표시)”, “목차작성”, “간지(색인지)”를 부착하고 “100페이지 이내” 작성, “5매 이내 요약서(따로첨부)”

○ 심사발표 시 사용할 PPT 자료(5분 이내 분량)는 심사일 이틀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(20150624150@ep.go.kr)로 제출

※ “제출서류목록” 순서와 형식은 임의변경 금지

아. 유의사항 :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

-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이어야 함

7.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

가. 심사기준: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, 별표 8의2 및 보건복지부·서울시 「보육사업안내」 적용

-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(신규·변경)
-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

평가항목	계	어린이집 운영계획	원장·내정자의 전문성	운영체의 보육·복지사업 운영 실적	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	운영체의 재정능력
배점	100	35	35	10	15	5

나. 선정방법

-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
- 수탁 신청자가 1개소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
-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,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
-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, 원장의 전문성,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심사 결과, 신청자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위탁체 재모집

8. 심사 일시 및 결과발표

가. 심사일시 : 2021. 7월 중 (※ 심사일은 별도 통지)

※ 불참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
나. 심사방식 : 서면 및 면접 심사

다. 면접방법 : 발표 및 질의응답(※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)

- 발 표 자 : 원장(단,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모두 참석)
- 발표내용 :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 의지, 비전, 취약보육 계획 등 (PPT 작성 자료로 5분 이내 발표,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)

라. 결과발표 : 은평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

9. 기 타

가.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나. 접수 후 열람·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증빙자료 미첨부,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다.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 및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·형사상 고발조치 함
라.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은평구의 유권해석에 따름
마. 기타사항은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(☎ 351-7105)로 문의. 끝.